광고매체 광고게시계약서

광 고 주(이하 광고주라 함)과(와) 광고대행사(이하 광고대행사라 함)는(은)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시하기를 희망하고 광고대행사 는 이에 동의하여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수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			
제1조 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체에 광고주가 광고를 게시하는데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			
제2조 (계약목적물) 본 계약을 위해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에게 다음의 광고매 체를 제공한다.			
광고매체 소재지	매체종류	규격(W×H)	수량
 ※ 계약목적물은 매체종류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, 예를 들어 광고매체가 영상인 경우 표출시간 및 1일당 표출 횟수 등으로 계약목적물을 정한다. 제3조 (광고내용) 광고대행사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주의 광고내용은 다음 			
제3소 (광고대용) 광고대행사의 · 과 같다. 광고주명 (제품, 브랜드)	풍고매세에 대인	. 용고수의 용고	- 내용은 낙음
제4조 (계약기간) ① 본 계약의 [;] 로부터개월 (일 이후 [;] 일) ② 계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.	까지로) 한다. (2	계약체결일 ~ 20	년월

제5조 (광고료) ① 광고료는 광고게시일부터 <u>매 1개월 기준</u>(매월) 금 ______원(₩______)으로 한다. 부가가치 세는 별도로 한다.

- ② 광고 게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수계산에 의하여 산정한다 (일수계산 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).
- ③ 광고대행사는 광고료 이외의 어떠한 집행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다.

제6조 (지급방법) ①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광고주는 광고게시일부터 매월 일 (계좌이체 등 지급 방식 기재) 방식으로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료를 지급한다.

- ② 광고료 지급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광고주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료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[10일] 이내에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료를 지급한다.
- ③ 광고주가 지급기일까지 광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[10%]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.

제7조 (광고물 제작) ① 광고물은 광고주가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광고대행사 에게 제작을 의뢰할 수 있다.

- ② 광고주가 광고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.
- 1. 광고대행사는 광고를 게시할 광고매체에 따른 제작사양을 제공하며, 광고 주는 이에 따라 광고물을 제작하여야 한다.
- 2. 광고주는 광고게시일자 [2주] 전까지 광고대행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.
- ③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.
- 1. 광고주는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시안, 원고 등을 광고대행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2. 광고대행사는 광고물 제작 전에 광고주에게 제작할 광고물의 설계도서(도 안, 디자인 등)를 제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3. 광고물 제작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하며, 금액은 ______원

- (₩_____)이다. 다만,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광고물 제작비용을 광고대행사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- 4. 광고주가 광고물 제작비용을 완불한 경우 광고대행사가 완성한 광고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광고주에게 속한다.
- ④ 광고물을 제작하는 자는 광고물 제작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관서의 신고,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책임은 광고대행사가 부담한다. 상기 신고, 허가 등을 위해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⑤ 광고물을 제작하는 자는 광고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이 있을 경우 권리 상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상대방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
제8조 (광고물의 설치, 유지보수 및 검수) ① 광고대행사는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광고매체 및 광고물의 설치, 유지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 며, 광고매체에서 광고물이 최상의 상태로 운영, 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광고대행사는 광고매체에 광고물 설치를 완료한 후 광고주에게 설치보고서(증빙자료 첨부)를 제출하며, 또한 광고 게시 기간 중 매분기마다 광고주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검수보고서를 제출한다. 구체적인 기간 및 방식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9조 (계약내용의 변경)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 (계약해제, 해지) ①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광고대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주로부터 인도받

- 은 광고물 또는 시안 등을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1조 (불가항력 등) 계약기간 중에 천재지변, 폭동, 전쟁,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해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.

제12조 (양도 또는 담보) ①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② 을은 본 계약목적물을 광고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13조 (비밀준수의무)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. 본 규정은 본 계약의 종료나 해체 또는 해지후에도 적용하기로 한다.

제14조 (분쟁의 해결)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.

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.

광고주와광고대행사는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광 고 주 상 호:

주 소:

대표자 : (인)

광고대행사 상 호 :

주 소:

대표자 : (인)